

부산대학교 생명산업융합연구원 운영세칙

제정 2015. 12. 30.

개정 2020. 08. 07.

개정 2024. 12. 23.

개정 2026. 06. 17.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「부산대학교 연구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26조에 의거 생명산업융합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생명자원과학 분야 및 생명산업융합 분야의 연구와 학술교류
2. 산하 연구센터의 연구 활동 지원
3. 수탁 및 용역 연구의 수행
4. 학술자료와 간행물의 발간
5.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지원
6. 우수 연구인력양성
7. 산학협력활동 지원
8. **국책 대형(집단)과제 수주활동의 지원**
9. 기타 연구원의 사업에 부합하는 활동

제3조(임원)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되, 원장은 부산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1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경우에는 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여야 하며, 협약 등에서 정한 경우는 협약 등을 따른다.

② 연구원에 부원장을 두되, 부원장은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조직 및 기능) ① 연구원에는 연구기획실과 연구지원실을 둔다.

② 각 실에 실장을 두고, 각 실장은 원장이 위촉한다.

③ 연구기획실과 연구지원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.

1. 연구기획실 : 과제수주 지원, 대외홍보 및 협력, MOU체결, 학술대회 개최, 연구원 주관행사, 연보발행 등에 관한사항
2. 연구지원실 : 행정지원, 예산 편성·집행·정산, 연구능률성과급 지급, 운영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사항

④ 원장은 **국책 대형(집단)과제의 수주활동을 위해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 경우, 운영**

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할 수 있다.

⑤ 연구원에는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센터별로 추구하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한다.

1. 생명자원개발연구센터 : 농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와 조사사업을 통하여 농민 교육, 지역 농업의 활성화 및 농생명산업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지역개발연구센터 : 지역의 문제 해결과 비전(vision) 제시를 위한 정보 제공과 실용적 연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3. 푸드테크혁신연구센터 : 식품의 생산, 개발, 제조 및 가공, 유통 관련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 및 제품화하는 푸드테크 핵심 연구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4. 미래동물생명자원연구센터 : 미래지향적인 동물생명자원 연구를 다각화 하고, 신기술과 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동물생명자원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유관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.
5. 선충연구센터 : 식물 기생 선충에 대한 연구·교육, 농가실태조사를 통한 피해 경감 대책 개발과 및 국내·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.
6. 의료소재기기연구센터 : 미래고부가가치 의료소재기기 기반기술연구, 실용화기반 기술 육성, 전문인력양성, 산학연 공동 연구 활성화를 추진하여 미래전략사업의 핵심으로 특화를 목적으로 한다.
7. 첨단애그테크융합연구센터 : 바이오산업 및 첨단농업분야에 애그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, 농업 응용, 생물학, 식품 및 축산 시스템과의 융합연구 기반 산업 문제 해결·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다.
8. 항노화소재개발연구센터 : 항노화에 효능을 가진 국내외 천연물 소재의 발굴 및 작용기전 규명을 통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천연물 소재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한다.
9. 환경에너지기술연구센터 : 신 산업창출에 따른 국내·외 환경현안의 기술적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절감 기술 및 그린산업기술창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다.
10. 식물유전육종센터 : 식물유전자원의 수집 및 보존, 평가를 하고 육종소재로의 활용도를 증대하여 작물의 신품종 육성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11. 미래생명연구자원센터 : 생명과학, 보건의료연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생명연구자원의 발굴, 보존, 기반기술연구, 실용화연구,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여 동남권 거점센터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12. 탄소중립바이오기술혁신연구센터 :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바이오기술 기반의 친환경 소재·에너지·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에 확산하여 지속 가능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⑥ 연구센터장은 원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연구원 등) ① 연구원에 연구교수, 연수연구원, 객원연구원, 겸임연구원, 전임연구원, 특별연구원, 연구보조원,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교수는 연구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인사로 부산대학교 초빙교원 등 임용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초빙이 가능하며, 원장의 추천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연수연구원은 연구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인사로 부산대학교 연구원 규정에 따라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연수연구원 임명 후 6개월 이내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재임용 할 수 있다.

④ 겸임연구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(위촉)하고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재임명(위촉)할 수 있다.

⑤ 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이나 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원의 연구와 발전에 필요한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이하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.

⑥ 전임연구원은 연구원의 업무와 관련되는 학문분야의 석사학위 이상(박사과정이 포함된 통합 또는 연계과정 수료자 포함)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⑦ 특별연구원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의 대학원과정 이수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⑧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·박사과정 재학생(수료자 포함)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특수기능 소지자도 임명할 수 있으며,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⑨ 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둔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③ 운영위원은 부원장과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원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과 운영
2. 예산과 결산 심의
3. 운영세칙 개정과 폐지
4. 연구센터 평가 및 개폐
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자문위원) 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생명자원과학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경력을 갖는 전문가로서 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기타)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15년 12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20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세칙에 따라 임명된 산업과학기술연구센터, 말과학연구센터, 국제창의혁신휴먼센터의 각 센터장은 이 운영세칙에 따라 임명된 푸드테크 혁신연구센터, 미래동물생명자원연구센터, 첨단애그테크융합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